

94년판 『환경백서』로 본

폐기물 예치금 · 부담금제도

환경처는 국내 환경 현실과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등을 정리하고, 향후 환경보전 시책 방향 등을 제시한 1994년판 『환경백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내용 가운데 포장산업과 연관된 '폐기물 관리 현황과 대책'을 지난호에 실려본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폐기물 예치금 · 부담금제도'와 관련해 운영 실적과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목차

- 1.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제도
 - 1-1. 대상품목 및 요율
 - 1-2. 폐기물 예치금 납부 및 반환실적
 - 1-3. 폐기물 예치금 제도 시행 효과
 - 1-4. 폐기물 예치금 제도 개선 실적
- 2. 폐기물 처리 부담금제도
 - 2-1. 대상품목 및 요율
 - 2-2. 대상품목별 시행시기
 - 2-3. 부담금제도의 효과
- 3. 폐기물 관리기금

1.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의 경우 원인 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생산 및 발생 자체를 억제·감량화하는 한편 재질의 대체, 회수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유도함으로써 폐기물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자원화율도 높이고자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1-1. 대상품목 및 요율

1992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최초 시행될 때에는 음·식료류 등의 용기,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유독물제품 등 7종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

였으나 회수·처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일부품목은 예치금 대상품목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3년 6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시 화장품용기,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유독물제품, 일부전지, 합성수지를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PET병, 의약품용기, 에어컨디셔너를 추가하여 5종 11개 품목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품목은 기존의 예치금 요율을 유지하고, 타이어는 신차용이 추가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요율보다 인하하였다.

1-2. 폐기물 예치금 납부 및 반환 실적

1) 예치금 납부실적

93년도에는 총 28,425백만원의 예치금을 부과, 93년말 기준으로 27,800백만원이 납부되어 98%의 납부율을 보였다. 이는 92년도 29,023백

만원 부과와 비교시 약 2.1% 정도 감소한 28,425백만원이었다.

국내 제조업자의 경우 총 480개 업체에 26,989백만원을 부과하여 26,368백만원이 납부됨에 따라 97.7%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수입업자의 경우 4,458건에 1,435백만원을 부과하여 1,432백만원이 납부됨에 따라 99.8%의 납부율을 보였다.

예치금 대상품목의 업종별 부과금액 순위는 음식료류, 가전제품, 유탄유, 부탄가스, 타이어, 주류, 전지, 살충제, 화장품, 유독물 순이었다.

2) 예치금 반환실적

예치금반환액은 총 2,230백만원(반환율 : 7.8%)으로 이는 92년도 553백만원(반환율 : 1.9%)과 비교시 1,677백만원(5.9%)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회수·처리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타이어(41.2%), 유탄유(30.7%)와 전지류(53.3%)는 비교적 회수·처리실적이 높으나 가정배출 품목인 음식료류·주류·화장품(1.5%), 살충제·부탄가스·유독물(0.08%), 가전제품(0.03%)의 회수·처리실적은 매우 낮은 편이다.

1-3. 폐기물 예치금제도 시행효과

1) 예치금 대상 제품용기의 생산억제 및 환경친화적 대체재 개발

▲ 유수은전지 감소

수은함유량이 1ppm 이하인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를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은함유량이 1ppm을 초과하는 망간건전지, 알카리·망간건전지 생산량이 92년

(표 1) 예치금 대상품목 및 요율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음식료류·주류·의약품	가. 종이팩 ○ 250ml이하 ○ 250ml초과	개당 20전 개당 40전
	나. 금속캔 ○ 뚜껑부착형 ○ 뚜껑분리형	개당 2원 개당 4원
	다. 유리병 ○ 100ml이하(의약품에 한한다.) ○ 350ml이하 ○ 350ml초과	개당 1원50전 개당 2원 개당 3원
	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500ml이하 ○ 500ml초과~1500ml이하 ○ 1500ml초과	개당 3원 개당 5원 개당 7원
2. 전지	가. 수은전지	개당 100원
	나. 산화은전지	개당 50원
3. 타이어	가. 대형	개당 400원
	나. 중·소형	개당 100원
	다. 이륜차용	개당 40원
4. 유탄유	가. 유탄유	개당 20원
5. 가전제품	가. 텔레비전	kg당 30원
	나. 세탁기	kg당 30원
	다. 에어컨디셔너	kg당 30원

비고 : 1. 제1호 음식료류·주류·의약품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4호 유탄유의 경우 출고량의 65%에 한하여 부과하며 육상내연기관용 유탄유와 기어유에 한한다.

(표 2) 예치금 부과 및 납부실적(93)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납부액	미납액	납부율(%)
합계	28,425	27,800	625	97.8
제조업자 (480업체)	26,989	26,368	621	97.7
수입업자 (4,458건)	1,435	1,432	3	99.8

11,523톤(1,383백만원)에서 93년도 839톤(102백만원)으로 93%에 해당하는 10,684톤이 감소하였다.

▲ 금속캔의 뚜껑부착형 증가

92년 뚜껑부착형의 금속캔 생산량이 667백만개(1,334백만원)에서 93년 1,289백만개(2,572백만원)로 증가한 반면 뚜껑분리형 캔은 92년도

생산량이 2,968만개(11,873백만원)에서 93년에는 2,785백만개(10,652백만원)로 6%에 해당하는 183백만개가 감소하였다.

▲ 공병보증금으로 전환

92년 음식료류, 주류의 유리병 용기중 예치금대상이 205백만개(588백만원)에서 93년도에는 164백만개

(454백만원)로 20%에 해당하는 41백만개가 예치금대상에서 감소되어 공병보증금대상으로 전환되었다.

2) 타이어·윤활유등 회수·처리 활성화

92년도 타이어 회수·처리량이 55만개에서 93년도 257만개로 증가하였으며, 윤활유의 경우는 92년도 11백만에서 93년도 37백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화은전지의 경우 92년도 1.8백만개를 회수·처리하였으나 93년도에는 회수·처리량이 11백만개로 증가하였다.

3) 예치금 대상품목 매입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민간단체가 93년도에 수집한 예치금 대상제품·용기를 예치금단가를 기준으로 총 7,715톤(502백만원)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내역은 종이팩 2,255톤(162백만원), 알루미늄캔 105톤(23백만원), 철캔 2,452톤(100백만원), 유리병 961톤(18백만원), 1,805톤(189백만원), 살충제·부탄가스용기 137톤(10백만원)이었다.

1-4.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실적

1) 예치금 대상품목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시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음식료류·주류의 PET병, 의약품(자양강장제에 한함)의 유리병·PET병·금속캔·종이팩 및 가전제품 중 에어컨디셔너를 94년부터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추가품목에 대한 94년도 예치금 부과는 제품출고실적 신고시기를

[표 3] 품목별 예치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부과액	납부액	납부율	국내제조업체수
총 계		28,425,026	27,800,196	97.8	480
음식료류		15,859,682	15,508,682	97.8	300
가전제품		3,495,937	3,491,111	99.9	12
윤활유		2,591,258	2,591,257	100	20
부탄가스		1,514,929	1,252,064	82.6	9
타이어		1,414,854	1,414,854	100	6
주류		1,238,367	1,238,347	100	26
전지		1,100,129	1,099,808	100	5
살충제		906,227	900,431	99.4	17
화장품		266,555	266,555	100	63
유독물		37,088	37,087	100	22

[표 4] 폐기물예치금 부과·납부 및 반환현황(93)

품목	규격	요율 및 금액	발생량 (천개, 톤, 천)	부과액 (천원)	납부액 (천원)	미납액 (천원)	회수차지량(천개, 톤, 천)	반환액 (천원)	반환률 (%)
총 계				28,425,026	27,800,196	624,829		2,230,207	7.8
소 계				17,364,603	17,013,583	351,020		261,444	
음식료류·주류·화장품	종이팩								
	○ 250ml이하	0.2원/개	4,215,889	843,076	842,935	141	67,960	20,288	
	○ 250ml초과	0.4원/개	1,248,904	499,569	483,125	16,444	2,615	1,123	
	금속캔								
	○ 두껍부착	2원/개	1,309,495	2,611,784	2,605,950	5,834	14,258	32,294	
	○ 두껍분리	4원/개	2,825,694	10,814,975	10,556,517	258,457	3,028	34,673	
유리병									
○ 350ml이하	2원/개	911,104	1,823,067	1,754,132	68,935	30,164	62,294		
○ 500ml초과	3원/개	257,365	772,131	770,922	1,209	34,763	110,772		
소 계				906,226	900,430	5,796	—	1,416	0.16
살충제	○ 500ml이하	20원/개	5,620	112,404	106,884	5,520	—	1,416	
	○ 500ml초과	30원/개	26,460	793,822	793,546	276	—	—	
소 계				1,514,929	1,252,063	262,865	—	—	
부탄가스	○ 100~200ml	10원/개	150,890	1,514,929	1,252,063	262,865	—	—	
소 계				37,087	37,087	—	—	355	0.9
유독물	○ 500ml이하	20원/개	527	10,548	10,548	—	—	1	
	○ 500ml초과	30원/개	884	26,539	26,539	—	—	354	
소 계				1,100,129	1,099,808	321	11,418	586,662	53.3
전지	○ 수은전지	100원/개	—	—	—	—	—	—	
	○ 산화은전지	50원/개	12,677	633,895	633,879	16	11,418	578,899	
	○ 일반전지	120원/kg	3,872	466,234	465,929	305	—	7,763	
소 계				1,414,854	1,414,854	—	2,572	582,990	41.2
타이어	○ 대형	500원/개	1,102	551,253	551,253	—	2,108	336,107	
	○ 중·소형	150원/개	5,551	832,705	832,705	—	2,108	336,107	
	○ 이륜	50원/개	617	30,895	30,895	—	0,055	3	
소 계				2,591,257	2,591,257	—	37,615	796,255	30.7
윤활유			129,563	2,591,257	2,591,257	—	37,615	796,255	
소 계				3,495,937	3,491,111	4,826	34	1,084	0.03
가전제품	○ TV	30원/kg	53,215	1,596,456	1,591,630	4,826	14	441	
	○ 세탁기	30원/kg	63,316	1,899,480	1,899,480	—	20	643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치금의 납부고지 시기를 1994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다.

2) 부담금품목으로 전환

기존 예치금 대상품목중 화장품,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유독물제품, 리튬전지, 망간전지 및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카드뮴 전지는 국내의 기술적·경제적 여건상 재활용이 곤란하고 제품·수입업자의 회수·처리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담금품목으로 전환하였다.

3) 용량규격 변경

음식료류·주류의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의 규격을 종전 2,000ml 이하만 적용하였으나 94년부터는 20,000ml 이하로 확대하고 최소규격을 폐지하였다.

4) 신차 타이어의 예치금 적용

타이어의 경우 종전 신차에 부착되는 것은 예치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환용 타이어 출고량만 예치금을 부과하였으나, 94년부터 국내에서 출고되는 신차에 부착되는 타이어도 예치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요율은 종전보다 개당 100원~10원까지 낮추었다.

1-5. 향후 개선 방안

1) 현행 문제점

▲예치금 대상품목에 냉장고 등 회수·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한 일부제품이 누락되어 폐기물관리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치금요율의 부적합

예치금요율이 실질적인 회수·처리비용보다 낮아, 회수·처리가 부진

[표 5] 품목별 예치금 반환실적(93)

(단위 : 백만원)

품목별 구분	계	음식료류 주류 화장품	살충제 부탄가스 유독물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부과액	28,425	17,365	2,458	1,100	1,415	2,591	3,496
반환액	2,230	261	2	587	583	796	1
(반환율 : %)	(7.8)	(1.5)	(0.08)	(53.3)	(41.2)	(30.7)	(0.03)

[표 6] 용량규격 변경내역

품 목	종 별	용 량	규 격
		종 전	변 경
음식료류 · 주류	종이팩	100ml이상 2,000ml이하	20,000ml이하
	금속캔	50ml이사 2,000ml이하	20,000ml이하
	유리병	50ml이상 20,000ml이하	20,000ml이하

[표 7] 타이어요율 변경내역

규 격	요 율 및 규 격	
	종 전	변 경
○ 대 형	개당 500원	개당 400원
○ 중·소형	개당 150원	개당 100원
○ 이륜차용	개당 50원	개당 40원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회수·처리의무자의 소극적 태도

회수·처리의무자인 제품·수입업자가 회수·처리체계 구축 및 처리시설 설치에 소극적이다.

2) 개선 방안

▲냉장고 등 일부제품의 예치금 대상품목 추가는 제조업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회수·처리체계 구축, 재활용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예치금 대상품목요율의 점진적 조정

수집·운반·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상응한 요율이 될 수 있도록 예치금요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자의 적극적인 회

수·처리체계 구축 유도

기존 타이어공업협회, 윤활유공업협회와 같이 가전제품, 전지, 음식료류 등의 품목도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2. 폐기물 처리 부담금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처리 및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소비행태를 전환시킴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1. 대상품목 및 요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기물처리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재료용기는 살충제, 유독물 용기 등 9종 15개 품목으로 [표 8]과 같으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는 제외된다.

2-2. 대상품목별 시행시기

폐기물 처리 부담금 대상품목중 과자제품, 부동액, 형광등, 껌, 1회용기 저귀는 93년 7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살충제·부탄가스제품·유독물용기, 화장품, 전지는 94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제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합성수지는 「합성수지폐기물 처리사업법」이 폐지되는 94년 4월 1일부터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2-3. 부담금제도의 효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소비형태 전환으로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억제와 자원재활용이 촉진되고 기업은 폐기물 다량 발생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고 회수·재활용의 촉진으로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회수·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약, 매립지의 설치 및 관리비용의 감소 등으로 사회전체의 환경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

품 목	종 별 및 규 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부탄가스 제품·유독물제품	가. 살충제·유독물용기	
	○ 500ml이하 ○ 500ml초과	개당 5원 개당 11원
2. 화장품	가. 유리병	
	○ 100ml이하 ○ 100ml초과	개당 2원 개당 3원
	나. 금속용기	
	○ 분사형 금속용기 ○ 기타 금속용기	개당 6원 개당 4원
3. 과자제품	○ 3가지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 4가지이상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개당 5원 개당 10원
4. 전지	○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개당 1원50전
5. 부동액	○ 부동액	1당 20원
6. 형광등	○ 형광등	개당 5원
7. 껌	○ 껌	판매가의 0.25%
8. 1회용 기저귀	○ 1회용 기저귀	개당 1원
9. 합성수지	○ 폴리에틸렌	판매가의 0.7%
	○ 폴리프로필렌	
	○ 폴리스티렌	
	○ 염화비닐수지	
	○ 에이·비·에스(A·B·S)수지	
	○ 에이·에스(A·S)수지	
	○ 메탈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머	
	○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머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P.V.D.C)수지	
	○ 폴리에스테르수지	
	○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수입페플라스틱류	
○ 폴리아세탈	판매가의 0.35%	

비고 :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3호 과자제품의 경우 용기에 사용되는 종이·합성수지·금속·유리·목재·섬유·피혁 등의 재료중 3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는 용기에 한한다.

3. 제7호 및 제9호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되는 경우 C.I.F 가격기준으로 한다.

주 : 1) 살충제는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망간전지 및 알카리·망간전지는 수은이 1ppm이상 함유된 것에 한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표 9] 폐기물관리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92	93
계	30,185	48,500
폐기물예치금	25,224	30,620
재활용폐기물판매차액	2,497	1,531
기금운용수입	1,056	1,694
전년도 이월금	—	14,655
재활용폐기물 매입회전금 회수	1,408	—

3. 폐기물 관리기금

3-1. 설치 목적

폐기물 관리기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2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3-2. 기금조성현황

폐기물 관리기금은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992년에는 30,185백만원, 1993년도에는 48,500백만원을 조성하였다.

3-3. 기금운영 현황

(표 10) 폐기물관리기금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92	93
계	15,531	33,986
예치금환불	623	2,485
재활용폐기물매입	1,408	9,639
재활용사업소 및 시설설치운영	11,058	18,776
재활용 기술 개발보급 및 홍보	2,422	2,788
기금운영	20	298

폐기물 관리기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폐기물의 구매 및 비축, 예치금의 환불, 폐기물 재활용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원, 폐기물 재활용 연구 및 기술개발, 폐기물유통 정보센터 설치·운영, 폐기물 재활용산업 전시회 개최, 폐기물 재활용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담기구로서 기능을 보강하고, 재활용품 비축기지 및 재활용종합단지 등의 설치를 통한 재활용폐기물 처리기반의 확충, 폐기물재활용 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재활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사업 등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정처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4. 기금운영 방향

'95서울國際包裝機資材展

SEOUL INTERNATIONAL PACKAGING EXHIBITION '95

1. 전시안내

- 가. 전시기간 : '95. 4. 10(월) ~ 4. 14(금)(5일간) 10:00~17:00
- 나.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 다. 주 최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
- 라. 후 원 : 상공자원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방송공사
- 마. 협 찬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대리점협회
- 바. 참가대상 : 국내외 포장 관련 기자재 생산 또는 취급업체 및 포장디자인 영역업체
- 사. 참가대상 품목 :
 - 포장재료 및 용기
 - 포장기계 및 부품
 - 포장재료 가공기기
 - 물류관련 기자재
 - 기타관련기기
 - 포장디자인
- 아. 전시규모(전시장면적) : 360개 부스(7,488㎡) 1개 부스 : 3m×3m

2. 참가신청

- 가. 신청기간 : '94. 9. 1~12. 31(전시장 소건축시 마감)

- 나. 신청장소 및 문의처 :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진흥부 전시과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 (02) 708-2070~3 FAX : (02) 765-9679
 -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부 국내전시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한국종합무역센터 13층
전화 : (02) 551-4412~7 FAX : (02) 557-5784
- 다.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요청하면 우송해 드립니다.).....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요전시품카타로그 1부
- 라. 참가비(VAT별도)

구분	전시면적만 신청	전시면적+조립식부스
국내업체	₩ 900,000/부스(9㎡)	₩ 1,215,000/부스(9㎡)
해외업체	US \$ 1,620/부스(9㎡)	US \$ 2,070/부스(9㎡)

- * 납입처 :
 - 국내업체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온라인 : 국민은행 031-25-0000-553)
(온라인 : 상업은행 112-01-212081)
 - 해외업체 및 AGENT(단순수입판매업체) : 대한무역진흥공사
(온라인 : 상업은행 424-01-001351)
- * 제반서비스(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 신청 : 대한무역진흥공사